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‘2024년 8월 31일’에서 ‘2027년 12월 31일’로 연장하고자 함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국토교통부예규 제400호

## 공항명칭 관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

공항명칭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2024년 8월 31일”을 “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0조(유효기간) 이 예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<u>2024년 8월 31일</u>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0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2027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</p>